

2020년도 제3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일반회계 세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22억 8천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5백만원(0.8%)이 감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09	12,389	12,284	2,275	△105	22.7%	△0.8%	
세외 수입	경상적	8,591	8,591	8,486	△105	△105	△1.2%	△1.2%
	임시적	1,026	1,026	1,026	0	0	0.0%	0.0%
보조금	386	2,766	2,766	2,380	0	616.7%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	6	6	0	0	0.0%	0.0%	

※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 일반회계 세출

- 스마트도시정책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50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034억 7천 6백만원 대비 1.5% 증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13,098	103,476	105,056	△8,042	1,580	△7.1%	1.5%	
행정 관리	소 계	113,098	103,476	105,056	△8,042	1,580	△7.1%	1.5%
	행정운영경비	734	734	734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사업비	112,364	102,742	104,322	△8,042	1,580	△7.2%	1.5%
교 부 금	-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55	2,447	4,027	1,372	1,580	51.7%	64.6%
블록체인기반공유 행정도입	645	632	1,012	367	380	56.9%	60.1%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1,450	1,255	1,555	105	300	7.2%	23.9%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560	560	1,460	900	900	160.7%	160.7%

3. 특별회계 세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490억원으로 당초보다 490억원(순증)이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0	0	49,000	49,000	49,000		
지방채	0	0	49,000	49,000	49,000	-	-

4. 특별회계 세출

- 스마트도시정책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76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86억 2천 2백만원 대비 263.4%

증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행정관리	소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2020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스마트도시통신 인프라 구축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Ⅱ .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임대료 감면)에 따라 기정예산(123억8천9백만원) 대비 0.8% 수준인 1억 5백만원을 감액조정 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09	12,389	12,284	2,275	△105	22.7%	△0.8%	
세외 수입	경상적	8,591	8,591	8,486	△105	△105	△1.2%	△1.2%
	임시적	1,026	1,026	1,026	0	0	0.0%	0.0%
보조금	386	2,766	2,766	2,380	0	616.7%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	6	6	0	0	0.0%	0.0%	

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감액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을 1.3%(1억5백만원)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공유재산임대료)	7,824	7,719	△105 (1.3%)	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공유재산임대료’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에스플렉스 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2020년에는 임대면적 증가('19년 11,941㎡ → '20년 32,787㎡)로 임대료(8억3천5백만원)와 관리비(69억8천8백만원)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총 78억 2천 4백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020년 당초 세입추계

- 2020년 추계액 : 7,823,554천원
- 산출내역
 - 공유재산임대료(임대료)(업무시설 6개소, 근생시설 4개소) : 834,811천원
 - ▶ 업무시설(민간기업 3개소) 123,388천원
 - ▶ 업무시설(공공기관 3개소) 511,954천원
 - ▶ 근생시설(편의점 등 4개소) 199,469천원

- 공유재산임대료(관리비) : 6,988,743천원

▸ 고정관리비(76,449.89㎡ : 임대공간 및 공공시설 입주공간) : 5,153,946천원

▸ 변동관리비(76,449.89㎡ : 임대공간 및 공공시설 입주공간) : 1,834,797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3개 시설은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과 에스플렉스 센터 출입통제로 사실상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4개 시설은 6개월간 공용관리비 50%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 중 1억 5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2020년 제3차, '20.4.28.)'에서 '적정'의견을 득하였음.

※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2020. 2. 1. ~ 2020. 9. 31.) 감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20년 추경 세입추계

◆ 추경예산 추계액 : 7,718,543천원 (△105,012천원)

◆ 산출내역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20.3.2.)에 의거 에스플렉스센터 입점업체에 대해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24,912천원), 고정관리비 감면(80,099천원)

※ 현실화된 매출액 감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출입통제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 입점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50% 감면

□ 감면결정 사항

○ 임대료 감면 : 3개 시설, 임대료율 50% (총 24,911천원, 6개월분) 감면

구 분	○○ 편의점	카페 ○○○ ○○○○○	푸드코트
임대료율	7.11% → 3.55%	7.28% → 3.64%	1.30% → 1.00%

○ 공용관리비 감면 : 4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총 80,099천원, 6개월분) 감면

구 분	○○ 편의점	카페 ○○○ ○○○○○	푸드코트	○○ 피트니스
감 면 액	2,493천원	4,294천원	20,920천원	52,392천원

○ 다만, 지난 3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2017년 70.5%, 2018년 63.5%, 2019년 83.4%)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는 에스플렉스 센터에 입주한 시설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 예산편성에 기인한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세입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재산임대료’ 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8,009,075	6,676,218	83.4	7,525,987	4,775,505	63.5	632,066	445,797	70.5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3억 8천만원,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3억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9억원 등 총 3건에 15억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개별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1,012	632	380 (60.1%)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380백만원 - 전산개발비 380백만원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1,555	1,255	300 (23.9%)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3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백만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1,460	560	900 (160.7%)	○ 인공지능 기반 안내로봇 제작 900백만원 - 전산개발비 400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백만원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은 관련 법령(「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 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6.5.)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은 '20.6.15,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은 '20.6.16)하였는바, 이는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은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기반 공유 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 3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블록체인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정보 주체)가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로, 비대면·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임.

□ 추진계획

-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 배포
 - － 공원·미술관·박물관 등의 디지털 입장권, 전자신분증, 디지털 청사출입증 보관
 - － 전자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신원증명서 디지털화 보관
 - － 개인 디지털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데이터 주권(데이터 조회, 제공, 삭제 등) 행사
 - ※ 전자지갑 : 스마트폰에 신원정보 등을 보관하고,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
- 활용방안
 - －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이용한 출입증, 입장권 발급·보관·사용



① 입장권, 출입증 신청
(본인확인)



② 전자지갑에
입장권, 출입증 보관



③ QR코드 포출



④ 출입구 QR코드 스캔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11,849	631,849	380,000
사무관리비	44,600	44,600	0
공공운영비	82,549	82,549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0
전산개발비	876,700	496,700	38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전 산 개 발 비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확산 개발 496,700,000원*1식 = 496,700천원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380,000,000원*1식 =380,000천원
	증감사유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증액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와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자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무인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배송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 기기의 도움으로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말함.

- 다만, 동 사업은 입장권이나 전자신분증 보관, 각종 신원증명서 디지털 보관을 위한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각종증명서를 담은 전자지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은 전자지갑 만든다, 2019년 1월 22일자.

-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는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2억9천8백만원) 처리하고, 2019회계연도에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을 재차 명시이월(2억3천만원) 처리하고 있고,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2017년 8천만원, 불용률 22.8%, 2018년 1억3천3백만원, 불용률 10.3%, 2019년 5억4천2백만원, 불용률 20.4%)이 발생하고 있는바,

- 이는 성급한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 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겠음.

〈 최근 3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17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350,000	134,990		134,990	80,018
18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006,990	586,901	298,089	-	122,000
19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전산개발비	2,632,920	1,862,996	229,105		540,819

▶ 이월사유

- 2017년 : 국가 블록체인 중장기 전략계획에 우리시 특화 사업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긴급히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 2018년 : 추경예산 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발주를 '18.11월에 수행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
- 2019년 : 대금e바로시스템 등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사업 발주지연('19.10.) 되었고,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감리비도 이월

〈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350,000	350,000	134,991	134,991	80,018
2018	1,149,800	134,991		1,284,791	853,332	298,090	133,369
2019	2,350,831	298,090		2,648,921	1,877,985	229,105	541,831
2020	645,249	229,105	△13,400	860,954	71,385		789,569

※ 2020년 예산변경 1,340만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감액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이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어디나 지원단 운영

- “어디나 지원단 운영(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내들이)”은 2019년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노노(老老) 케어 전문가 활동비 지급을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55,470	1,255,470	30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43	36,243	0
사무관리비	513,200	513,2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00	8,800	0
특정업무경비	87,000	87,000	0
연구용역비	560,227	560,227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	50,000	30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모사업 지원 50,000,000원*1개 사업 = 50,000천원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300,000원(어디나 지원단 월 활동비)*25개 자치구*20명*2개월 = 300,000천원
	증감사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어르신으로 구성된 디지털 노노케어 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제고 교육 추진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이 어르신을 교육하는 눈높이 교육, 1:1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력이 낮은 어르신과 공감대 형성으로 반복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체계적 교육과 활동경험 축적으로 디지털 노노(老老)케어 전문가로 육성 ○ 서울시, 자치구, 디지털재단 협력체계 구축하여 모집, 교육, 파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사업 추진체계 마련, 재원마련 - 자치구 : 자치구별 지원단 모집, 관리, 파견(구별 수혜기관 조사) - 디지털재단 : 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가능 	<p>□ 추진계획</p> <p>① 어디나지원단 구성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디지털 능력을 갖춘 5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선발 ○ 교 육 : 서울디지털재단 역량강화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강의, 실습, 발표 등 교육과정 운영 (총30시간) - 지원단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육 전·후 디지털 역량 측정 등 역량 관리 - 자치구별 어디나 지원단 워크숍 등 네트워크 강화 <p>② 어디나지원단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파견 신청기관과 일정 조율하여, 자치구별 지원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관내 복지관, 경로당, 독거노인 등 수요처 발굴 - 각 기관(복지관 등)은 교육대상자 모집(10~20명), 교육장소 확보 ○ 지원단 활동비 지급 : 매월 30만원 내외 <p>□ 소요예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예산</th> <th>산출기초</th> <th>재원 마련</th> </tr> </thead> <tbody> <tr> <td>지원단 활동비</td> <td>300</td> <td>30만원*25자치구*20명*2개월</td> <td>20.6월 추경편성</td> </tr> </tbody> </table>	구 분	예산	산출기초	재원 마련	지원단 활동비	300	30만원*25자치구*20명*2개월	20.6월 추경편성
구 분	예산	산출기초	재원 마련						
지원단 활동비	300	30만원*25자치구*20명*2개월	20.6월 추경편성						

'19년 시범사업 결과(서울디지털재단 추진)

- 봉사단 구성 : 34명 (만55세 이상)
- 교육실적 : 464명 교육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등 31개 기관 방문)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와 제35조,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고령층(51.5%)이 가장 낮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고령층은 더욱 고립됨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2018년보다 1.0% 상승하였고(이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의 70%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이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로 계층별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나타남.¹⁾

- 다만,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교육, 고령인 정보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평생교육국,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된 상태임)”,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및 코칭하는 “50+ 스마트기기지원단(50플러스재단) 일자리 사업”도 시행 중으로,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어디나 지원단 운영” 사업이 일회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와 중복 및 유사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여지는 없는지, 향후 사업 부서간 협업 도모를 통한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12., 38-47면 참조.

- 또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고,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교육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디지털 문해 학습장도 코로나19로 중단상태임), 사업추진 가능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연구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IT기술 첨단화, 자동화 및 무인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개요

- 기 간 : 2020. 3. ~ 12.
- 내 용
 -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 교육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체험 중심의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57백만원(출연금)

추진계획

- 무인기기(키오스크) 활용 '시민 체험형 디지털 문해 학습장' 운영
 - 키오스크 체험기기(서초구 개발) 비치 디지털 문해 학습장 운영
 - ▶ 거점 네트워크 기관,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등에 4개 학습장 조성
 - ※ '20년 문해교육7관 중심 운영, '21년 이후 예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복지관 등으로 확대 운영 검토
 - 일상생활 중심의 체험형 '키오스크/스마트폰 융합' 디지털교육 실시
 - ▶ (키오스크) 타겟 발권, 음식 주문, ATM, 공공기관 서류 발급 등 / (스마트폰) 교통, 금융 등 앱 이용

< 키오스크 교육 현장 예시(서초구) >



-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강사 선발 및 연수 운영(30명)
 - 학습자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제공을 위한 강사 인력 선발 및 연수운영
 - ▶ 서울디지털재단, 50플러스재단 등의 관련 사업과 연계 협력 예정
-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파견
 - 디지털 문해교육 수요기관 조사 후 실습기자재 및 문해교육 강사 파견

추진일정

- 무인기기 체험교육 기반 구축 : 3~4월
-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선발·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파견 : 5~12월

※ 평생교육국, 2020년 서울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2020.3, 13면.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50+스마트기기지원단』 참여자 모집공고문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50+세대를 모집합니다.

※ '50+스마트기기지원단'은 정보 취약 계층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 하단의 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50+세대의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50+세대는 사회 참여를 통해 양코르 커리어 실현하고, 정보 취약 계층은 디지털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50+스마트기기지원단'
- 활동기간 : 2020년 7월~11월(5개월)
- 참여대상 : 만50세~만67세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3.1.1.~1970.12.31.일자 중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교육실비, 상해보험 등
 - 활동비 : 525,020원(원칙) = 57시간 × 9,211원
 - 교육실비(교육 참여자 1일 1.5만원을 출석일수 당 지급), 상해보험 등
- ※ 동 사업의 활동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액 차감 후 지급예정
- ※ 코로나19로 참여자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 교육실비 미지급
- 사업규모 : 2020년 참여자 30명 규모 운영 예정

2. 모집내용 및 선발기준

□ 모집개요

- 모집규모 : 30명
- 모집기간 : 2020년 5월 25일(월)~6월 5일(금), 18:00까지
- 모집대상 :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우대조건은 심사 시 우대사항이며, 필수요건은 아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요건	※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현재 취업상태 이나, 정년퇴 직 등 시간 제 활동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지원자로 스캔본을 신청 시 반드시 정 부파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만 50~67세(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1953.1.1.~1970.12.31.)이면서 서울시 거주주민(다음 중 1개 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대표자만 해당) • 직무교육 수료(90% 이상 출석 등) 가능자 • 최대 일 활동시간(57시간) 활동이 가능한 자 • 신청일 현재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 활동에 지장(활동일 또는 활동시간 중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취업상태(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사람)인 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정년퇴직 등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 가능 	
		* 최종선발 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생년월일 및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

※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스마트기기지원단 참여자 모집공고문.

다. 비대면 시정안내 인공지능 로봇 도입

- “비대면 시정안내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업은 로봇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 비대면 시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 4억원과 로봇 바디(2대)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사회에 맞추어 인공지능(AI) 로봇을 신청사 1층 로비 및 민원실에 설치하여 서울시의 주요 시책 및 청사 안내, 방역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60,000	560,000	900,000
사무관리비	12,000	12,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연구용역비	45,000	45,000	0
전산개발비	900,000	500,000	4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0	50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전 산 개 발 비	○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 200,000천원	○ 로봇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 400,000,000원*1식 = 400,000천원
	○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인공지능 회의록지원시스템 고도화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로봇에 탑재할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 로봇 H/W(바디) 구매 250,000,000원*2대 = 500,000천원
	증감사유	
	로봇 바디 2대 제작(충전후 약 4시간 구동으로 교대근무)	

□ 추진계획

- 제공서비스 : 주요 시책 및 청사 안내, 방역케어 서비스
- 설치장소 : 신청사 1층 로비 및 민원실
- 콘 텐 츠 : **시정 홍보·청사 안내**
 - 시정홍보 : 주요시책, 청사 안내 등
※ 서울톡(챗봇)의 콘텐츠 활용
 - 청사안내 : 시민 환영인사(시장, 홍보대사 등 음성합성), 민원실·화장실 등 시설위치 안내(자율주행)
 - 주요기능 : 간단 대화(질의/응답), 음성봇 기능, 터치스크린, 외국어지원 등



※ 사례 : CES 2020 - 서울관에 안내로봇 설치, 서울시·참여기업 제품 홍보('20.1월)

○ 추진일정

- 프로그램 개발 및 로봇 도입 : '20.7~12월

- 다만, 주요시책, 청사 안내 등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서울톡(챗봇)의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전산개발비'로 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능형 챗봇 (ChatBot)〉

- 대화로 질문의 적합한 답과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커뮤니케이션 SW
- ARS와 달리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여 학습된 답변을 제공하는 AI기반 자동화 서비스



□ '서울톡' 접속방법 등

○ 접속방법 - 카카오톡 친구 검색 활용 (※서비스명 : '서울톡')



○ 홈 화면

챗봇 시작하기	- 홈 화면 - 8대분야별 메뉴 (교통/행정/복지/환경/문화/경제/안전/주택) - 자주 찾는 정보는 버튼으로 별도 제공 (이용안내/부서안내/기관안내 등)
현장민원 접수 및 결과	- 현장민원접수 46종 안내 - 현장민원접수 결과 확인
120에 전화하기	- 120다산콜센터(☎120)로 전화 연결
의견 남기기	- 제안 또는 건의사항 입력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	- 사용자가 직접 질의어 입력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톡」 오픈·운영계획, 2020.1., 12면 재인용

○ 또한, 로봇은 로봇 바디(하드웨어(H/W))와 로봇이 동작·제어하는 기능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산출내역은 1대당 2억 5천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국립박물관의 안내로봇 도입사례에서 본 외관 구매비용 6천만원과 1억 6천만원보다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내로봇 도입사례

구분	LG전자	한컴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로봇모델	에어스타 - 높이 : 150cm - 무게 : 120kg	큐아이 - 높이 : 150cm - 무게 : 160kg	ADDY - 높이 : 150cm - 무게 : 140kg

구매 비용 (1대)	외관	1억6천만원	6~7천만원	6~7천만원
	S/W	3억원	3~5억원	
	합계	4억6천만원	3억6천~6억2천만원	6~7천만원
도입사례		인천공항공사('18.11.)	국립박물관('18.12.)	창원NC파크('19.4.)
사진				

안내로봇 산출내역

○ 로봇의 구성

- 로봇 H/W : 로봇 바디 및 로봇이 동작·제어하는 기능 S/W 포함 일체
(로봇 바디, 음성·얼굴인식 등 각종 센서 및 엔진, 방역케어장치 등)
- 로봇 S/W : 로봇에 탑재될 서울시 고유의 안내콘텐츠로 별도 제작

○ 로봇 H/W 견적서 : 1대당 2억5천만원

(단위:천원)

구분	A사	B사	비고
로봇 바디	70,000	80,000	로봇 바디 및 스피커 포함
위치센서(비전,라이더,초음파)	8,000	4,500	
음성인식 센서+엔진	24,500	35,000	
얼굴인식 센서+엔진	26,300	40,000	
자동충전스테이션	13,000	10,000	
로봇 관제 기능	60,500	100,000	로봇관제는 1식으로 2대 제어 가능
방역케어(열화상카메라,LED살균등)	25,000	-	B사 로봇은 방역케어기능 없음
부가가치세	22,700	26,950	
합계	250,000	296,450	

-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청 신청사 로비에 시정안내 인공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돼서야 가능함에 따라 도입 시기의 적절성과 인천국제공항 청사는 면적이 넓어 이동성 있는 로봇이 유용하지만, 신청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로비에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호담당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인천국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는 제1터미널 8대, 제2터미널 6대 출국장 등에서 운영중으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능과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안내로봇으로 여행객과의 대화,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데일리 2019년 8월 3일자).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0. 5. 20. 기준)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 8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나 기타 원인에 의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전산개발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사업과
- 빅데이터담당관의 사업 중 “시민통계발간”,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공공운영비)” 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 중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행정포털 운영(전산개발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 공간정보담당관 사업 중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전산개발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공공운영비)”,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전산개발비)”, “드론공간정보 운영(사무관리비)”, “3D 구축 Virtual Seoul 구축(전산개발비)” 사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 중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공공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 데이터센터 사업 중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클라우드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인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20. 5. 20.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나)	지출잔액 다=(가-나)	불용률 다/가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 기반 공유형 정 도입	전산개발비	725,805	229,105	0	725,805	100.0%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공공운영비	166,682	105,000	21,000	145,682	87.4%
	전산개발비	638,199	0	0	638,199	100.0%
	시설비	332,500	15,675	0	332,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52,500	0	0	752,500	100.0%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	513,200	16,000	16,000	497,200	96.9%
	연구용역비	560,227	0	0	560,227	100.0%
	전산개발비	226,805	226,805	0	226,805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000	0	0	145,000	100.0%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무관리비	13,600	0	0	13,600	100.0%
빅데이터담당관						
시민통계발간	사무관리비	88,300	0	0	88,300	100.0%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	1,513,637	0	0	1,513,637	100.0%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8,044	4,831	4,831	803,212	99.4%
	사무관리비	2,305,496	0	0	2,305,496	100.0%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사무관리비	50,000	0	0	50,000	100.0%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무관리비	28,600	22,000	2,000	26,600	93.0%
	공공운영비	834,512	818,906	70,208	764,303	91.6%
	행사운영비	42,000	0	0	42,000	100.0%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운영비	21,804	0	0	21,804	100.0%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전산개발비	372,000	57,000	57,000	315,000	84.7%
디지털 시민 시장실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연구용역비	45,000	0	0	45,000	100.0%
	전산개발비	500,000	0	0	500,000	100.0%
행정포털 운영	전산개발비	199,000	0	0	199,000	100.0%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612,811	599,206	99,868	512,943	83.7%
공공서비스 예약시스 템 운영	전산개발비	558,000	0	0	558,0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12,970	0	0	112,970	100.0%
개인정보보호체계 고 도화	전산개발비	170,500	104,544	0	170,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605,553	900,661	0	1,605,553	100.0%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 화 구축	전산개발비	427,570	0	0	427,570	100.0%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19,008	0	0	19,008	100.0%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무관리비	61,700	1,200	1,200	60,500	98.1%
	전산개발비	74,482	0	0	74,482	100.0%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 축	사무관리비	1,698,100	10,000	10,000	1,688,100	99.4%
	전산개발비	560,000	0	0	560,000	100.0%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206,018	0	0	206,018	100.0%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전산개발비	2,018,701	0	0	2,018,701	1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사무관리비	1,711,660	816,486	40,999	1,670,660	97.6%
	공공운영비	53,600	1,188	1,188	52,412	97.8%
	자산및물품취득비	3,586,480	126,098	126,098	3,460,382	96.5%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	30,900	27,500	0	30,900	100.0%
	전산개발비	536,250	519,310	0	536,250	100.0%
	시설비	88,800	79,133	0	88,8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6,760	178,420	0	406,760	100.0%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	16,600	0	0	16,600	100.0%
	민간위탁금	379,557	0	0	379,557	100.0%
	시설비	20,000	0	0	20,000	100.0%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170,000	197,878	197,878	972,121	83.1%
지능형 CCTV 고도화	공공운영비	45,000	0	0	45,000	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8,348,000	0	0	8,348,000	100.0%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전산개발비	344,232	0	0	344,232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77,000	0	0	177,000	100.0%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227,386	0	0	227,386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23,916	0	0	523,916	100.0%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370	0	0	370	100.0%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5,152,314	484,096	145,216	5,007,097	97.2%
	자산및물품취득비	11,674,360	9,642	0	11,674,360	100.0%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7,711	29,195	10,695	77,015	87.8%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600	1,050	1,050	18,550	94.6%
	자산및물품취득비	1,709,716	0	0	1,709,716	100.0%
정보자원 통합 관리	사무관리비	5,500	1,041	1,041	4,458	81.1%
	자산및물품취득비	11,329,566	0	0	11,329,566	100.0%
클라우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1,000	8,310	1,050	59,950	98.3%
	자산및물품취득비	3,433,414	0	0	3,433,414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무관리비	20,014	524	524	19,489	97.4%
	민간경상사업보조	418,562	0	0	418,562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1,930	0	0	1,93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94,336	0	0	294,336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고령인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	848	0	0	848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6,180	0	0	36,180	100.0%
기본경비	국내여비	26,880	2,860	2,860	24,020	89.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0	307	307	2,253	88.0%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금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해 지방채(모집공채) 490억원(순증) 발행에 따른 증액이고, 세출은 기정예산(186억2천2백만원) 대비 263.4% 수준인 490억 5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0	0	49,000	49,000	49,000		
지방채	0	0	49,000	49,000	49,000	-	-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67,672	18,622	49,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자가통신망 및 와이파이 구축 49,0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50백만원 - 시설비 25,919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3,082백만원

가. '지방채' 발행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기(당초 '22년 구축 완료 → 변경 '21년 구축 완료)에 완료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90억원을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음.

※ “모집공채”는 「지방채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를 말하고,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임.

「지방채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지방채정법 시행령」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19.11., 32면.

5) 모집공채자금

○ 모집방법

- 사 모 : 발행주체가 연고 인수선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
 - 은행, 보험, 투신사 등을 통한 인수
- 공 모 : 발행주체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투자자를 공개모집
 - 직접모집 : 발행주체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
 - 간접모집 : 발행주체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

○ 공채활용

-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3~5년 정도의 단기간에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한 경영수익적 사업의 자금선으로 주로 운용
- 자금수요 최적시기에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

※ 매출공채보다는 실세금리(지방채 발행시장)에 의한 모집공채 발행을 활성화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필요

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을 조기(당초 '22년 구축 완료 → 변경 '21년 구축 완료)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186억2천2백만원) 대비 490억 5천만원(263.4%)이 증가한 676억 7천 2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7,672,011	18,622,011	49,050,000

사무관리비	129,500	79,500	50,000
공공운영비	1,480,837	1,480,83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시설비	31,070,814	5,152,314	25,918,500
자치단체자본보조	230,000	230,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34,755,860	11,674,360	23,081,5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 와이파이 유지보수 소모품 구매 2,500,000원 = 2,500천원	○와이파이6 장비 성능평가(BMT) 실시(2차) =40,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5회 = 6,000천원	-와이파이6 시험인증 수수료 1식*25,000,000원 =25,000천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운영비 = 17,000천원	-시험장비(와이파이6 단말기) 임차료 50대*200,000원 =10,000천원
	- 스마트서울네트워크 실무협의체 운영 500,000원*6회 = 3,000천원	-시험과정 사진 및 영상 촬영비 전일 촬영(장비고정샷, 전체샷) 500,000원*2명*5일 =5,000천원
	- 민관 거버넌스 및 자문단 운영비 2,000,000원*4회 = 8,000천원	○공공 와이파이 브랜드 개발 및 홍보 BI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 1식*10,000,000원 =10,000천원
	- 기술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제작비 3,000,000원*2회 = 6,000천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홍보 = 54,000천원	
증감사유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 제공 및 우수한 와이파이6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2차 성능평가(BMT) 실시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및 이용안내 홍보영상 제작	
시 설 비	○ 공공 와이파이(실내용 24포트) 설치공사 1,600,000원*300개소 = 480,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실외용 8포트) 설치공사 720,000원*6,890개소 =4,960,800천원
	○ 공공 와이파이(실외용 8포트) 설치공사 720,000원*1,946개소 = 1,401,120천원	
	○ 유무선 통신인프라 설치공사 = 3,271,194천원	○ 유무선 통신인프라 설치공사 =20,957,700천원
	- 광통신망 구축 32,672,274원*94km = 3,071,194천원	- 광통신망 구축 평균단가 32,695,320원*641km =20,957,700천원
	- 기존 개별 자가망 연계 50,000,000원*4식 = 2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 전역 공공 와이파이 및 유무선 통신인프라 증가(25,918백만원 증액) ※공공 와이파이 6,890개소 추가, 광케이블 641km 추가 설치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정보소외계층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 1,440,000천원	○ 서울전역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23,081,5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 (실내용) 구매 1,000,000원 * 4대 * 300개소 = 1,200,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실외용) 구매 2,690,000원*6,890대 =18,534,100천원
	- 네트워크 스위치 (PoE) 구매 800,000원*300개소 = 240,000천원	-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 구매 660,000원*6,890대 =4,547,400천원
	○ 서울전역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 10,234,36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 (실외용) 구매 2,000,000원*4,475대 = 8,950,000천원	
	- 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구매 660,000원*1,946대 = 1,284,360천원	
	- 기존 개별 자가망 연계 50,000,000원*4식 = 20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증감사유	
	서울 전역 공공 와이파이 증가(23,082백만원 증액) ※공공 와이파이 AP 6,890대, 네트워크 스위치 6,890대 추가	

- 동 사업은 기존에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을 3년 계획으로 시행하여 완료(2022년)하려고 하였으나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와 하반기에 15개 자치구 추가 선정·구축을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해 조기구축(2021년)하기 위한 것임.

조기구축 방안 : 3년 → 2년(추경 반영으로 1년 단축)

당초(3년)			조기구축(2년)			
계	25개구	892억	계	25개구	892억	
1차('20.08)	(7개구)	149억	1,2차('20.12)	(20개구)	640억	'20 추경 (491억)
2차('21.08)	(10개구)	402억	3차 ('21.08)	(5개구)	252억	'21 본예산
3차('22.08)	(8개구)	341억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기존 계획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4,237km	2,977km (94km)	3,607km (630km)	4,237km (630km)
② 공공 WiFi 조성	23,750대	11,895대 (4,475대)	19,000대 (7,105대)	23,750대 (4,750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변경 계획

구분	계	2020년 (1차, 5개구)	2020년 추경 (2차, 15개구)	2021년 (3차, 5개구)
계	89,196	14,906	49,000	25,290
유무선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구축 길이)	46,738	3,271	20,958	22,510
	1,519km 중 (누적 4,402km)	332km 중 (3,215km)	641km 중 (3,856km)	546km 중 (4,402km)
공공 와이파이 설치 (AP 설치대수)	42,458	11,635	28,042	2,780
	11,030대 중 (18,450대)	1,680대 중 (9,100대)	6,890대 중 (15,990대)	2,460대 중 (18,450대)

< 5개 시범자치구 선정 >

- 시는 성동구에 39억원, 은평구에 33억원, 강서구에 36억원, 구로구에 17억원, 도봉구에 16억원 등 시비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광통신망 332km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 와이파이 장비(AP) 1,680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자치구별 소요예산 및 물량

구분	사업비(백만원)	공공 와이파이(대)		자가 광통신망(Km)	
	계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계	14,000	1,364	1,680	818	332
성동구	3,900	131	400	102	136
은평구	3,300	177	350	107	31
강서구	3,564	404	590	234	55
구로구	1,659	524	240	264	18
도봉구	1,577	128	100	111	92

-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자치구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추진의지, 정보격차 해소 기대효과 등을 고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 위원회를 거쳐 1차 시범사업 대상 5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 시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 인구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별 실시설계 결과와 인력여건 등을 분석하고 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자치구의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률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통합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집행부는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일자리 창출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의 세출예산을 지방채(490억원) 발행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제35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세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 또한,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채 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됨(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채발생계획 수립기준」, 2019.11.)에 따라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심사를 받지 않았음.
- ※ S-Net 조기 구축을 위해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210억원,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 280억원 등 총 4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지방채 발행 한도 :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 467억의 60%인 280억원이내
공공 와이파이 조성 사업비 484억원의 60%인 290억원 이내

○ 둘째, 동 사업은 관련 법령(「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 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6.5.)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20.6.11.)하였는바,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 “서울이 전역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 셋째,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67억 3천 8백만원)’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484억 3천 8백만원)’ 사업을 구분하여 투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이는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련 법령규정을 회피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예산편성은 모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67억 3천 8백만원)’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484억 3천 8백만원)’ 사업비가 500억원에 육박한바, 이 또한 타당성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산 규모를 과소 편성하는 등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추후 예산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동 사업들의 1차 시 투자심사 결과(2019.1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2단계)' 판정을 받았고, 2차 시 투자심사 결과(2020. 5. 8.)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판정을 받았음.

< 1차 시 투자심사 결과('19.10.17.) >

시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추진 ('19.10.17.)

- ▶ 사업명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2단계)
- ▶ 처리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할 것

시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추진 ('19.10.17.)

- ▶ 사업명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2단계)
- ▶ 처리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할 것

< 2차 시 투자심사 결과('20. 5. 8.) >

사업명	20.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사업
심사결과 및 내용	<p>(조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
사업비	46,728백만원 (시비 46,728백만원)
사업명	21.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심사결과 및 내용	<p>(조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
사업비	48,438백만원 (시비 48,438백만원)

○ 넷째, 하반기에 15개의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와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서울시 자가망 활용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고 함)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경찰·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단축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따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통신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

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이익” vs “불법행위”...서울시-과기부 와이파이 충돌!



“세금으로 통신사업 하는 건 불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문제없다!”(서울시)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와이파이’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사실상 '제4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자가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서울시에 '설득 모드'였던 과기부가 '정면 대응'으로 입장을 강화하면서, 와이파이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과기부 측은 "서울시가 자가망으로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의 복지 차원"이라며 과기부의 반발을 아예 일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논의 과정도 뼈격댄다. 과기부는 서울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니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몇 차례 실무진의 미팅을 거쳤지만 팽팽한 평행선만 긋고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만6330대를 주요 공공 생활권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사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서울, 부산을 6번 왕복하는 길이(4237km)의 자체 유·무선 인프라까지 구축한다. 10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1일 당정(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곳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자가망 '와이파이 단독 행보'와 대치된다. 와이파이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돌 양상이다.

▶과기부 "서울시, 통신사업 하겠다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과기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과기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운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용된 지자체의 '자가망' 역할을 넘어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는 자가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자가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부 인프라를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부 교신에 사용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자가망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기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를 연결하는 영역인 만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실상 통신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가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7조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안, 기술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 까다로운 기준을 거치는데 서울시는 이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사실상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셈"이라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보안 등의 문제도 크다"며 "도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됐고! 공공의 이익"...스마트도시법 맞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스마트도시법' 제42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의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스마트도시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앞세워 문제를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과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과기부, 국조실 SOS?...최기영-박원순 만남 성사 '촉각'= 결국 과기부는 수차례 설득에도 서울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청와대, 국회 차원에서 2022년

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4만1000곳까지 확대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가망' 단독 행보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당장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적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만큼, 상호 협의로 해결점을 찾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대면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실무 차원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의 고시를 개정해, 특례 조항에 대한 애매한 법적 해석 여지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견 검토도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부 측은 "서울시와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헤럴드 경제, 2020년 6월 1일자(<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01000430>)

- 또한, 동사업은 민선 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중 하나로써("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연도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줄속예산집행 등 문제발생소지는 없는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식 사업으로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여섯째, 과기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중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사업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조성" 사업과 중복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비효율성 및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공공Wi-Fi 품질 고도화, '20년 추경 : 198억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20년 추경 : 320억원)

○ (주요내용) 공공와이파이('14년 이전 설치)의 품질 강화를 위해 노후화 장비(1.8만개)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 '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2020년 6월 3일자.

- 또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의 자가통신망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조성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축 이후 운영과 유지보수에 비용 및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막대한 세금 지출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곱째, 지금도 많은 노인·장애인(정보취약계층)들은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 보유율이 일반 시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보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정보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에 자택 등 안전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보취약계층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공원이나 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2018년보다 1.0% 상승하였고(이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의 70%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이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로 계층별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1%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91.8%) 대비 15.7% 낮은 수준이고, 계층별로 연령층이 낮은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85.8%로 가장 높고, 장애인(78.3%), 고령층(74.0%), 농어민(72.5%)순이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75.3%로 일반국민 스마트폰 보유율(92.2%) 대비 16.9% 낮은 수준임.²⁾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은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237km), 공공 와이파이 조성(23,750대) 등 양적인 성과만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경우 AP 현황 파악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조사,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의 실시 없이 대량의 공공와이파이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통신기본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2019.9.

□ 추진방향

추진 목표 : 세계최초 도시전역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추진 방향 : 시민 : 통신복지 (공공WiFi, 시 전역 확대) + 행정 : 비용절감 (시·區·투출기관, 자가 통신망 통합사용) + 산·학·연 : 가치창출 (스마트서비스, 연구 무관 확장)

추진 전략 : 1. 신설과 기존 통신망 통합연계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효과 극대화
2. 공공 행정서비스뿐만 아닌 민간 연계서비스로 활용 가능성 확보
3. 기존시설(교통, 상수도, 지하철) 활용으로 시민체감 효과 조기 가시화
4. 잠재 자가 유무선통신망 효율적 유지관리 및 보안성 강화방안 마련

□ 구축방안 - 2021년까지 자가 무선통신망(4,237km) 구축

- 기존 인프라 활용·연결로 비용절감 및 기간 통신망 조기 완료(2,883km)
 - 서울시 : 시·구 421km 상수도 100km 도시고속도로 458km 교통 367km
 - 자치구 : 자치구 ↔ 주민자치센터 1,537km
- 생활권 중심 ‘리’자 형태의 신규 자가망 효율적 설계 방안 적용(1,354km)
 - 본 철 : 지하철, 교통시설물, 하천 등을 중심으로 메인통신망 구축
 - 자치구 : 공동구, CCTV지지대, 한전주 등을 이용 모세혈관식 통신망 연계
- 통합적인 연계·운동을 통해 보안성 향상과 통신망 공동체계 구축
 - 각 기관(부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개별통신망을 통합·연계 운영
 - 개별부서 및 사업소는 서비스 적용(Plug-In)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1단계)기존망 활용 및 연결 (2,883km) + (2단계)모세혈관식 통신망 신규확장 (1,354km)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12., 38-47면 참조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계획, 2019.9.

□ 추진체계



□ 서울 전역 공공WiFi 설치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내용 : 서울시 전지역 공공WiFi 설치(실외형 AP)
 - 現 생활권 면적의 31%(20km²)에서 **생활권 면적 100%(67km²)** 공공WiFi 설치
 - 기존 통신자원 활용과 지점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설치하여 시민체감 가치화
 - 소요량 산정

※서울시 면적 : 605.23km²

목표면적 ¹⁾	목표수량 ²⁾	현재(실외형AP)	산규구축
67.12km ²	23,750대	7,420대	16,3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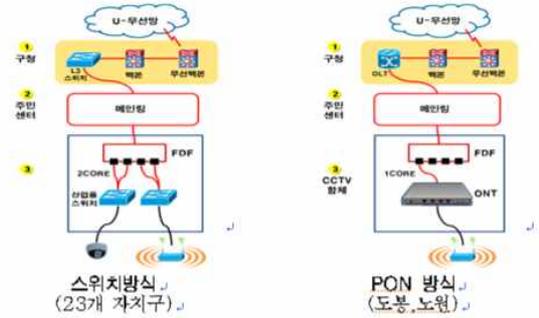
○ 연차별 설치계획

구 분	계	2020	2021
설치수량(대)	16,330	8,165	8,165
소요예산(백만원)	42,458	21,229	21,229

1) 목표면적 : 25개 지역 중 도로(50%)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등 시민 이용 공간 8개 지역 선정
 2) 목표수량 : 적정수량 = 적정면적 × 커버리지 × WiFi 장비 1대당 커버리지 (0.00282km² × (30m × 30m) × 3.14

○ 구축방안

- 공공WiFi 관리 일원화를 위해 AP는 서울시에서 **일괄구매(조달청)**
-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설계와 시공을 위해 **설치공사는 자치구에서 추진**
 - ▶ CCTV 폴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사·자치구 시설물 최대한 활용
 - ▶ 자치구 자가통신망 구성 형태에 따른 논리적 구성도



□ 복지시설 공공WiFi 설치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내용 : 복지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공WiFi 설치
 - 데이터 취약계층이 많은 청소년,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커뮤니티 공간 850개소에 집중 설치
 - ※ 소요량 산정 : 사회복지시설 6,405개 전수조사(18.3~6.)
- 연차별 설치계획

구 분	계	2020	2021
설치수량(개소)	850	300	550
소요예산(백만원)	5,992	2,064	3,928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